

2023년도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13.(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강태욱위원, 위정현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6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김태일 주임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42건(안건번호 제2023-90485호~9162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90485호~90488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0489호~90533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0534호~9162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6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796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3-14906호~1570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796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6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161회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구글 검색 결과 제한 심의는 쪽수를 기재하여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전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2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3-90485호~9162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

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0485호~9048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사안 총 4건임. (안전번호 제2023-9048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VPN 우회 시 블로그의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됨.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총 10개 중 7개는 202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 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해당 안전번호 제2023-90485호~90488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나 불법 웹툰 정보제공 블로그 안전을 심의할 때,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VPN 우회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반하람 주임: 그러함. 다만,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중 일부는 VPN 우회를 하지 않아도 접속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90485호~9048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0485호~90488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90489호~90533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하고,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 '■ ■ ■ ■' 및 '◆ ◆ ◆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59건임.
 (안전번호 제2023-9048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 ◆ ◆ ◆에서 절판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9049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 ■ ■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11개의 댓글을 통해 실제 거래가 진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3-9048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 ▲ ▲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32개의 채팅이 진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90489호~9053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3-90496호의 댓글 내역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안전번호 제2023-9049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 ★★★★★★ ★★★★★ ★★★★★ ★★★★★ ★★★★★ ★★★★★★
라는 댓글의 답글로 스캔파일의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90489호~9053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0489호~9053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90534호~9162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인어공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0692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인어공주’의 전체분량을 20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5. 24.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만화 ‘스파이 패밀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0982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스파이 패밀리’의 1권 ~ 10권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11권의 한국어판이 7월 중에 발매 예정인 만화임.

(방송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1018호는 블로그에서 방송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106화의 47분 전체 분량 중 17분 24초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 중인 사안임. 웨이브에서 VOD서비스 제공중인 방송임.

(방송 ‘아이돌잔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1019호는 블로그에서 방송 ‘아이돌잔치’ 7화의 1시간 26분 전체 분량 중 58분 7초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 중인 사안임. 영상하단에는 해당 방송에 대한 후기글이 기록되어 있음. 웨이브에서 VOD서비스 제공중인 방송임.

안전번호 제2023-91018호~91019호의 경우, 해당 방송에 출연한 연예인의 팬이 작성한 게시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영상물의 전체 분량이 아닌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3-91018호~91019호의 특이사항이 정확히 무엇인가.
- 반하람 주임: 안전번호 제2023-91018호의 경우 영상물의 전체 분량인 47분 중 일부인 17분만 게시하고 있다는 점, 안전번호 제2023-91010호의 경우 전체 분량인 1시간 26분 중 58분만 게시하고 있으며 밑에 짧은 후기글이 함께 게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 사항임.
- C 위원: 해당 방송에 출연한 연예인이 직접 게시한 게시물이었는가.
- 반하람 주임: 연예인 아닌 팬이 작성한 게시물임.
- A 위원: 스트리밍 형식으로 파일을 게시하지 않고, VOD 서비스를 제공 중인 방송사의 URL을 게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임.
- D 위원: 해당 방송의 유튜브 링크를 게시했을 경우 지금과 동일하게 영상의 시청이 가능한 것인가.
- 반하람 주임: 해당 방송들은 유튜브에는 게시되어 있지 않고, 웨이브를 통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3-91018호~91019호는 이용한 영상이 아주 짧은 분량이거나, 아웃링크를 게시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안전들과 달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의결해야 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시물은 아니라고 생각함.
- C 위원: 해당 방송에 출연한 본인이 직접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여러 차례 부결해 온 사례가 있지만, 공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팬 블로그의 사례는 이와는 다른 것 같음. 팬 블로그의 게시물이 라고 해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의결한 기존의 사례가 있는가.
- 반하람 주임: 기존의 사례는 없음.
- 이숙형 부장: 예전에 음악 저작물과 함께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설을 게시한 게시글이 시정권고 가결되어 삭제되었던 적이 있었고, 게시자가 해당 소설을 복구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문의했던 적이 있었음. 이후 영상물과 함께 후기글과 같은 게시자의 창작물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여 보고 있기에 특이안건으로 보고드렸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90534호~9162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위원: B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안전번호 제2023-91018호~9101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다른 건들과 같이 통상적인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안전번호 제2023-90534호~9162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0534호~9162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90485호~90488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90489호~90533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90534호~9162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4906호~15701호(순번 1번~796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20.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강태욱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